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7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 강경숙 • 이해민 • 진선미

신장식 · 김준형 · 황운하

조 국・이재정・백승아

박은정 • 정을호 • 고민정

문정복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 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음.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

안이 발의되면서 국회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이에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통과됨.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임. 특히, 해당 사업인 AI 디지털 교육 관련 사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과 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의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임.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3 삭제).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u><삭 제></u>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	
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	
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	
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u>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u>	
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	
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	
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u>한다.</u>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	
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	
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	
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	
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 <u>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u> 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 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 원의 380분의 90
-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 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 가.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
 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
 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 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 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 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 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